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주민투표 실시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수료 지급 등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등).
-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시설 인도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의 설치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II. 검토의견

1.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검토(안 제18조제4항)

- 제정안 제18조제4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 법의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 대상인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법문의 주어로 되어 있어 위촉 주체(“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상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규율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대상 조문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8조(공론화 등) ④ <u>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u>	제18조(공론화 등) ④ <u>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u>

2. 벌칙 규정 관련 검토(안 제46조)

- 제정안 중 제46조제1항은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미수범을 처벌하고 예비·음모 또는 선동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입법례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9조¹⁾와 같은 방식의 규율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39조(벌칙)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46조제1항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의 해석과 관련하여, 생명과 신체를 해한다는 것은 문리적으로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를 별도로 규율하고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원자력안전법」 제114조²⁾ 등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입법례와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로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46조제2항은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행위자의 관리시설의 파괴 또는 부당조작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다만, 안 제46조제2항의 구성요건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견 해당 형벌조항이 결과적가중범인 치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致死)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관리시설의 파괴 또는 부당조작을 한 행위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형량이 경한 「형법」 제250조³⁾의 일반살인죄를 적용법조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⁴⁾. 따라서 유사 입법례⁵⁾ 등을 고려하여 안 제46조제2항의 구성요건을 치사(致死) 및 살인을 동시에 포괄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u>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u>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u>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u>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u>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u>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

3)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하급심 판결인 울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24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51조는 '영아 살해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5조는 '영아유기치사죄'의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아유기치사죄에 영아를 유기하여 고의로 살해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아살해죄로 처벌한다면 영아를 유기하여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한 형의 영아유기치사죄로 처벌받게 되고, 영아를 유기하여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그보다 형이 가벼운 영아살해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과실범이 고의범 보다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처벌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단의 영아유기치사죄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5)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검토

- 제정안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의 수용의무⁶⁾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은 정)

6) 제정안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위하여 부지 적합성, 관리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